



학사구조개편추진규정

제정일	2016. 2. 1
개정일	2023.11. 1
개정차수	7차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제 1 장 총 칙 [장신설 2023.11. 1]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학사구조개편 추진 절차를 규정하고자 한다. (개정 2019. 3.15, 2023.11. 1)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구조개편”이란 학부(과) 및 전공(이하 “모집단위”라 한다)의 신설, 분리, 통합, 변경, 모집중지, 폐과 및 입학정원 조정 등을 말한다.
2. “신설”은 새로운 모집단위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3. “분리”는 하나의 모집단위를 2개 이상의 모집단위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4. “통합”은 2개 이상의 모집단위를 하나의 모집단위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5. “변경”은 모집단위의 계열, 수업연한, 명칭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6. “모집중지”는 모집단위의 학생 모집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7. “폐과”는 모집단위의 모집중지 후 편제정원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8. “입학정원 조정”은 본교 학칙 제4조에 규정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증원 또는 감원하는 것을 말한다.
9. “학과 경쟁력 평가”는 학과의 입시경쟁력, 충원율, 취업률 및 학과운영 등에 관한 주요 지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 1]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학칙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전문학사 입학정원에 적용한다. (개정 2023.11. 1)

제 2 장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 [장신설 2023.11. 1]

제 4조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 학사구조개편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3.15, 2023.11. 1)

제 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행정처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9. 3.15, 2020. 3. 1, 2023.11. 1)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19. 3.15, 2023.11.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하며, 위원장 궐석 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3.11. 1)

제 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2. 학과 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3. 학사 구조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사구조개편 관련으로 심의가 필요하여 위원장이 발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11. 1]

제 6조의 2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의결사항이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③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 1]

제 3 장 학사구조개편 추진 [장신설 2023.11. 1]

제 7조 (학사구조개편 추진방향) 학사구조개편은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건학이념, 교훈 및 사명
2.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3. 지역기반 산업수요 및 인력수급 전망 등 대내외 여건 분석
4. 교육부 학생정원 조정 계획 등 고등교육 정책 방향
5. 학과 경쟁력평가 결과 등 모집단위별 주요 지표 분석
6.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전문개정 2023.11. 1]

제 7조의 2 (학사구조개편 대상 선정기준) ① 학과 경쟁력 평가 결과 하위 10% ~ 30%인 모집단위는 학사구조개편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 학과 경쟁력 평가 결과 하위 10%인 모집단위는 학사구조개편 중점 추진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중 일부 모집단위를 예비 모집중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 모집중지 대상으로 선정된 모집단위가 차년도 학과 경쟁력 평가 결과 하위 10%일 경우 최종 모집중지 및 폐과할 수 있다.

③ 본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경쟁력평가 결과 및 모집단위의 발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비 모집중지 선정 과정을 생략하고 모집중지 및 폐과를 추진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경쟁력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사구조개편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략적으로 학사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학과 발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학사구조개편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1. 1]

제 7조의 3 (학과 경쟁력평가) ① 학과 경쟁력평가는 입시경쟁력, 충원율, 취업률 및 학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지표를 기반으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② 학과 경쟁력평가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 1]

제 7조의 4 (구성원 의견수렴) ① 학사구조개편 추진을 위하여 구성원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의견수

럼 결과를 학사구조개편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성원 의견수렴은 모집단위별 소속 전임교원, 재학생, 졸업생, 관련 산업체 등의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 1]

제 8조 (학사구조개편 절차) 학사구조개편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한다.

1. 모집단위별 구성원 의견수렴 및 학사구조개편 계획(안) 작성
2. 학과 경쟁력 평가 실시
3. 주요 행정부서 및 대상 모집단위 간담회 실시
4. 학사구조개편 계획(안) 수립 및 대상 모집단위 구성원 동의서 징구
5. 학사구조개편추진위원회, 교무위원회, 대학평의원회 및 법인이사회 심의. 단, 학사구조개편 내용이 본 규정 제2조의 5호 및 8호에만 해당되는 경우 법인이사회는 사후 보고로 갈음한다.
6. 학사구조개편 계획 확정 및 통보

[전문개정 2023.11. 1]

제 4 장 학사구조개편 후속조치 [장신설 2023.11. 1]

제 9조 (학사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① 학사구조개편 추진 대상 모집단위에 소속된 재적학생의 학습권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학사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폐과된 모집단위에 소속된 재적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모집단위로 전과할 수 있다.

③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적변동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1. 1]

제 9조의 2 (학사구조개편 추진에 따른 전임교원 소속 변경 등) ① 학사구조개편 추진 대상 모집단위의 전임교원은 신분과 소속 변경을 보장한다.

② 학사구조 개편 추진에 따라 폐과되는 모집단위의 전임교원은 본인 전공을 고려하여 타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속을 변경할 수 없는 전임교원은 전공전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공전환 교육 대상 전임교원은 해당 모집단위에 맞는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④ 2.5년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함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⑤ 전공전환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교원에게는 교육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비의 지급기간은 승인된 전공전환기간과 동일하며 매학기 등록 시 지급한다.

⑥ 해당 교육 기간에 학점 및 학위 취득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육비는 학교에 반환하여야 하고, 기간이 초과된 학기에 대하여는 교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전공전환 교육 대상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해당 모집단위 전공의 연계성과 교원확보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 1]

제10조 (학사구조 개편 추진에 따른 전임교원 연구지원 및 평가) 학사구조개편 추진이 이루어진 모집

단위의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 1)

1. 동서울대학교 교원연구학기제 규정에 따른 우선 선발
2. 교내연구비의 지원 우대
3. 학사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소속을 변경한 전임교원에게는 교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 1)
4. 학사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소속을 변경한 전임교원을 수용하는 모집단위에는 교원연구학기제 선발 우대, 기자재 구입 우선배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 1)
5. 학사구조개편 추진에 따라 소속을 변경한 전임교원은 인사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공정하게 평가한다. (개정 2023.11. 1)

제10조의 2 (학사구조개편에 따른 이행 의무) ① 학사구조개편 대상 모집단위는 최종 결정사항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학사구조개편으로 인해 소속변경이 결정된 교원이 자기개발 노력을 소홀히 하고, 학과운영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 1]

제11조 (경과조치) ① 학사구조개편 추진이 이루어진 모집단위의 지원시설(실습실 등)은 재배정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주관부서에서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11. 1)

② 그 밖에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